

# 의정소식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참여정 구현



함께 만드는 심포니

일시: 2002.11.12  
장소: 시민회관

이 천 시 의 회  
Icheon City Council



Icheon  
City  
Council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참여정 구현

Contents ● ● ●

발 간 사	②
의원총람	③
의회조직	④
의회운영 현황	⑤
• 회기운영	
• 의안별 안건처리 현황	
• 회기별 안건처리현황	
회기별 주요안건 처리내용	⑦
사진으로 본 의정활동	③5
의원주소록	③9
의회안내	④0

## 발 간 사



존경하는 20만 시민 여러분 !

제3대 이천시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그 간의 의정활동을 수록한 의정소식지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의정운영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전·현직 시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대 이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지난해 7월 8일 전반기 의회 구성 이후 그 동안 체득하고 축적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IMF이후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힘들어하고 있는 주민의 곁에서 애환과 고충을 함께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천시의회에서는 남은 임기동안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혁신적인 안목과 지적능력을 함양하여 초심의 자세에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민의의 전당으로 시민의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 지방자치의 정착과 이천시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다하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동안 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20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숙한 지방자치의 발전과 조기정착을 위하여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7월

이천시의회회장 유준열



# 의원총람

**의정 유준열** (의정) **신문면** **백사면** **의원 김정호** (의원)

**의원 김태원** (의원) **관고동** **창신동** **해포동** **의원 조명호** (의원)

**의원 이광희** (의원) **마장면** **의원 이현호** (의원) **부발읍** **의원 권영찬 (제1)** (의원) **의원 이종률 (제2)** (의원)

**의원 민병호** (의원) **호법면** **종리동** **대월면** **의원 김학인** (의원)

**의원 정운한** (의원) **모가면** **의원 김학인** (의원) **설성면** **장호원읍** **의원 오성주** (의원)

**부의장 서동예** (부의장) **의원 위철연** (의원) **울면** **의원 원종성** (의원)



# 의 회 조 직

❖ 제3대 이천시의회 전반기('02. 7. 1~ '04. 6. 30)

의 장 : 유 준 열

부 의 장 : 서 동 예

## 상 임 위 원 회

구 분	의회운영	자치행정	산업건설
위원장	권영천	김학인	김태일
간 사	오성주	이현호	이광희
위 원	김정호	이종률	오성주
위 원	이현호	김정호	권영천
위 원	정운한	서동예	정운한
위 원	이광희	원종성	위철연
위 원	-	민병효	조명호

사무국장 : 홍 학 선

## 전 문 위 원

의회운영	박창화
자치행정	이해수
산업건설	박규하

의 정 담 당

심 규 원

직 원 : 6 명

의 사 담 당

엄 기 화

직 원 : 4 명



## 의회운영 현황

이천시의회 제3대 전반기 원구성 이후 제55회부터 제62회 임시회  
(2002. 7. 1 ~ 2003. 6. 30)까지 의회운영 결과임.

### ● 회기운영

회 기 운 영	정 려 회	임 시 회
8회 (81일)	2회 (35일)	6회 (46일)

### ● 의안별 안건처리 현황

(단위 : 건)

의 안 의 종 류	건 수	가 결			부 결	철 회	
		소 계	원안가결	수정의결			
총 계	61	59	12	47	1	1	
조 례 안	소 계	42	40	7	33	1	1
	제 정	33	31	5	26	1	1
	개 정	8	8	2	6		
	폐 지	1	1		1		
규칙안	개 정	1	1		1		
동 의 안	6	6	1	5			
예 산 및 결 산	2	2		2			
승 인 안	8	8	4	4			
청 원	2	2		2			

◎ 회기별 안건 처리 현황

의안종류	회 수	건 수	가 결			부 결	철회
			소 계	원안가결	수정의결		
조 례 안 건		42	40	7	33	1	1
조 례 안	제55회 임시회	3	3	1	2		
	제56회 제1차정례회	4	4	2	2		
	제57회 임시회	4	4		4		
	제58회 제2차정례회	5	4	1	3	1	
	제59회 임시회	12	11	2	9		1
	제60회 임시회	2	2		2		
	제61회 임시회	11	11	1	10		
	제62회 임시회	1	1		1		
규 칙 안 계		1	1		1		
규칙안	제61회 임시회	1	1	0	1		
결 의 안 계		2	2		2	0	0
결 의 안	제58회 제2차정례회	1	1		1		
	제61회 임시회	1	1	4	1		
예 산 안 계		8	8		4	0	0
예 산 안	제56회 제1차정례회	2	2	1	2		
	제57회 임시회	1	1	2			
	제58회 제2차정례회	4	4	1	2		
	제61회 임시회	1	1	1			
동 의 안 계		6	6		5	0	0
동 의 안	제57회 임시회	1	1	1	1		
	제58회 제2차정례회	2	2		1		
	제59회 임시회	1	1		1		
	제60회 임시회	1	1		1		
	제61회 임시회	1	1		1		
승 인 안 계		2	2	0	2	0	0
승인안	제57회 임시회	1	1		1		
	제62회 임시회	1	1		1		



## 회기별 주요안건 처리내용

### 제55회 임시회

□ 회기 : 2002. 7. 8 ~ 7. 16(9일간)

□ 처리안건 : 5건(조례안 3, 주요업무보고, 기타)

□ 주요내용

● 제3대이천시의회전반기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선출

●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치행정위원회 : 51건, 산업건설위원회 : 94건

●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의결)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에 대한 효율적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가축방역 전담 인력이 보강 승인됨에 따라 수의 6급 1명 증원

● 이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일부수정의결)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설치되는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자치 활동프로그램의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개선 및 자율성 확대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보완

❖ 수정 주요골자

-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구성원중 새로이 도입한 시의원이 당연직 고문제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함.(안제17조 제1항, 제5항)
- 당연직 고문에 대하여 임기전에 해촉할 수 있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함.(안제 20조 제2항)

● 이천시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안(원안의결)

-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의 운영 및 육성을 위하여 운영경비 및 사업비지원, 공유재단의 대부근거, 공무원 파견 근거, 행정지원 근거, 권한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제56회 제1차 정례회

- 회기 : 2002. 9. 3 ~ 9. 11(9일간)
- 처리안건 : 6건(조례안 4, 승인안 2)
- 주요내용

-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원안승인)

- 일반, 특별회계 결산 내용

(단위 : 원)

회 계 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 기 업	기 타
세입결산액		342,395,914,604	267,513,866,255	74,882,048,349	15,880,778,901	59,001,269,448
세출결산액		234,396,604,983	205,223,778,858	29,172,826,125	11,064,080,535	18,108,745,590
잉 여 금		107,999,309,621	62,290,087,397	45,709,222,224	4,816,698,366	40,892,523,858
잉 여 금 내 역	명시이월	32,680,394,770	20,939,908,260	11,740,486,510	262,097,020	11,478,389,490
	사고이월	5,828,550,200	3,403,823,340	2,424,726,860	653,979,980	1,770,746,880
	계속비이월	41,531,817,500	12,790,598,710	28,741,218,790	3,520,748,240	25,220,470,550
	보조금사용잔액	4,678,315,236	4,323,356,634	354,958,602	32,000,830	322,957,772
	순세계잉여금	29,829,256,915	20,832,400,453	8,996,856,462	347,872,296	8,648,984,16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위원장-원종성, 간사-김정호

-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원안승인)

- 일반, 특별회계 결산 내용

구 분	지출결정액	지출액	불용액	비 고
계	443,000	443,000	.	가뭄으로 인한 용수개발비 보조사업 외 1건



## 회기별 주요안건 처리내용

- 이천시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일부수정의결)
  - 주민, 기업, 행정기관등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작성, 실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의 추진을 위한 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 수정주요골자
    - 협의회의 구성원을 현 운영체계에 맞게 보완하고 행정지원단의 지원체계를 집행부 기구에 맞게 인원을 보강함(안 제4조 제1항)
    - 행정지원단의 조직도를 높이고 지원사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새로이 정함(안 제11조 1항)
    -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칭함(안 제22조 제1항)
  
- 이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의결)
  - 현행 이천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는 1996년 3월 1일 제정 공포되고, 1999년 1월 11일 1차 개정 시행 중에 있으나, 현행법 제6조에 공개하지 아니하는 행정정보만 기술하고 있어, 행정정보 공개에 소극적 일 수밖에 없는 문제점 보완
  -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의결)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한법을 개정 시행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와 처리장 사용료 예치비를 하향 조정하고, 구분되어 있던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산정기준을 통합하여 이용자의 편의 제공  
(분뇨·정화조-기본요금 18,072원/750ℓ, 초과요금 1,565원/100ℓ)
  
- 이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일부수정의결)
  -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그간의 평가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쓰레기 종량제를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 규정 정비
  - 수정주요골자
    - 쓰레기 봉투의 현금 교환시 판매업자 및 배출자간의 분쟁소지가 없도록 이를 명확히 적용함(안 제19조의 3)

## 제57회 임시회

- 회기 : 2002.10. 29 ~ 11. 11(14일간)
- 처리안건 : 7건(조례안 5, 예산안 1, 기타 1)
- 주요내용

-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일부수정의결)

- 예산요구 및 승인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승인예산액	감 액	비 고
합 계	324,414,115	323,935,115	479,000	예비비로 충당
일 반 회 계	240,153,561	239,674,561	479,000	
특 별 회 계	84,260,554	84,260,554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위원장-민병효, 간사-권영천

-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원안승인)

- 개요

감사목적	2003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획득은 물론 시 행정 추진상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 잘못된 부분은 개선토록 종용하고 타당성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시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감사기간	2002. 12. 3 ~ 12. 9(7일간)
감사대상	실·국·소 및 각 읍·면·동, 시 산하 민간위탁기관(환경사업소)
감사대상기간	2001. 11. 1 ~ 2002. 10 31
감사반편성	상임위원회별
감사요령	사무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현황보고 청취, 감사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현장 확인
감사자료	2001명시, 사고이월사업 후진내역 외 319건



## 회기별 주요안건 처리내용

### ● 이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개정조례안(원안의결)

-현행 이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가 1996년 3월 1일 공포 시행되고 2000년 7월 28일 1회 개정공포 되어 16개 조문으로 구성 시행 운영되어 왔으나, 시행상 미비점이 많아 개인 소유 전통문화유산이 효과적으로 보호되지 못하고, 훼손과 망실이 되고 있어 새롭게 본칙 34개 조문과 부칙 2개항으로 전문(全文) 개정

### ● 이천시시립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원안동의)

-이천시의 역사와 고고·미술·민속자료를 수집·보관·전시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시키고 이에 관해 조사·연구·계몽·홍보하여 사회교육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시립박물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근거 마련

### ● 2002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원안동의)

#### ❖ 취득대상재산

- 토지 :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458번지 외 7필지 2,665㎡ 20,796천원  
※세부내역 ⇒ 취득재산목록 참조
- 건물 :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458번지외 10개소 11동 1,519㎡ 3,648,699천원
  - 마을단위우수처리시설 : 9개소 9동 1,040㎡ 3,097,000천원
  - 보건 지소 및 진료소 신축이전 : 2개소 2동 479㎡ 551,699천원
- 모가보건지소 신축이전 : 1동 347㎡ 398,341천원
- 표교보건진료소 신축이전 : 1동 132㎡ 153,358천원

### ● 이천시환경관련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원안동의)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위반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

### ● 이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원안동의)

-2001. 11. 22일자 (영제17412호)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



## 제58회 제2차 정례회

- 회기 : 2002. 12. 2 ~ 12. 27(26일간)
- 처리안건 : 13건(조례안 5, 예산안 2, 동의안 3, 기타 3)
- 주요내용
-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원안채택)

감사목적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통제권한으로 위민행정을 해야하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사통제함은 물론, 예산결산심사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수립하고자 자치행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하므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함.
감사기간	2002. 12. 3~ 12. 9 (7일간)
감사대상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민간위탁기관(환경사업소)
감사중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년도 감사·조사지적사항 조치 여부</li> <li>-주민분위행정 시행 여부</li> <li>-선심성·특혜성 행정집행 여부</li> <li>-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여부</li> <li>-기타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여부</li> </ul>
감사결과	주요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회기별 주요안건 처리내용

부서별	주요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
대민봉사실	(주)삼우바이오 증설승인부당	(주)바이오 공장소재지의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점도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조속히 집단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민원 해결
문화공보 담당관	애련정관리 소홀	'98. 12월에 교량난강보강보수 172m를 하였음에도 원목의 부식과 방수처리를 하지 않아 난간의 나무가 완전부식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안흥지와 애련정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심하게 거닐 수 있도록 난간을 교체 할 것.
	국제조각공원 작품관리소홀	확보된 부지가 없는 관계로 설봉공원에 기 설치된 69점은 대부분 설봉공원 입구에서 호수주변 산책로를 따라 설치되어 있어 세계적인 조각가의 작품성이 떨어지는 등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으므로 조각공원 부지를 확보하여 집합된 장소에서 조각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민방위장비 관리소홀	민방위 장비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직장대별로 소요량 대비 전량을 확보토록 조치하고 시본청 및 읍·면·동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소요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세무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소홀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6,854,918,000원으로 각 담당 부서에서 부과도 중요하지만 세입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빠른 시일내에 징수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기하기 바람
	합리적인 예산운영 미흡	예산회계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만 설치하지 못하는 지방세 제증명 무인 발급기 구입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산 운용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므로 향후 예산의 편성 요구는 확실한 자료 및 집행 가능한 것만 요구하도록 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체납액징수 소홀	10월말 현재 총 체납액이 19,476백만원으로써 징수금액의 5%를 포상하는 포상금 관련 조례는 재검토 후 정비토록 하고 체납액 징수 제고를 위해 읍·면·동재무팀 전담직원을 보강 또는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
회계과	공유재산 (건물) 관리소홀	관련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건물 총괄 대장비치 또는 전산입력자료를 조속히 비치하고 관리 대장상 미 정리된 사항들(위 지적사항)을 조속히 정리하여 재산관리가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국공유재산 매각 및 제한 소홀	국·공유지 매각제한은 상수원보호구역내로 한정하고 그밖에 지역은 자유롭게 관계법령에 의거 매각을 실시하므로써 시민들이 국·공유지를 매수 이용토록 환경부에 강력히 건의하기 바람.



부 서 별	주요지적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회 계 과	지체상환금 납부업체 공사수주 제한 강구	지체상환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계약 당사자간의 약속 불이행이며, 약속 불이행을 한 업체가 시공한 시설은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감사 등을 거쳐 지적 당해온 업체와 약속 불이행한 업체는 공사 수주 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등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회 계 과	종합운동장 한지형잔디 관리용역발주 부당	한지형 잔디 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증 소유자를 기능직으로 채용하여 관리토록 조치하기 바람.
	종합운동장 관리소출	지하 pit에 방수를 완벽히 하고 고인물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등 하자보수 지하 pit내 배관을 옮기던지, 천정의 전등을 수리, 보수 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 설치하고 보일러 증기 배관을 분배기인 컷다를 설치하여 부분 난방이 가능하도록 조치바람.
	보조경기장 및 실내체육관 건립계획 미흡	용역설계비를 2003년 제1회 추경시 확보토록 하고 실내체육관은 시기 적절하지 않으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현 종합운동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
보 건 소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소출	약품(백신)수급계획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로, 보건소에서는 예년의 무료 접종자수와 노인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무료약품을 충분히 확보하여, 이후에는 무료 접종자 시술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의약품수불 부적정	약품구입전에 물량파악을 정확히 하여 이월되는 약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수급조절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공 통	예산운영 부적정	예산절감 부분에 대하여는 높이 평가하나 대부분의 사업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등으로 인한 시기유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 및 판단 오류로 많이 예산이 장기간 동안 방치되고 사장되어 왔음 따라서, 각종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세밀한 진단 및 이월전 평가를 실시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이월을 지양하고, 연말에 집중 집행하는 관행을 타파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기 바람.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 운영부실	공공근로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활 능력을 배가시키고, 앞으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것.



## 회기별 주요안건 처리내용

부서별	주요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
지역경제과	외국인근로자 복지지원책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MF이후 실업률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3D업종에 대한 기피현상은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한 3D업종의 구인·구직은 심각성을 더해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에서 우리시 관내에 분포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33개 업체에 223명이 분산 근무하고 있음.</li> <li>• 외국인 산업연수생 복지에 관한 문제중 의료혜택 부재와 고용주의 비인간적 행위등이 여러 마스크를 통해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이들에 대한 관심이 표면화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연수생에 대한 실정과악은 물론, 지원책이 전무한 실정에 있음.</li> <li>• 우리시에서도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한 복지 등 근무여건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고용주와의 간담을 비롯해 외국인 산업연수생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 마련해 주고</li> <li>• 상공회의소와 연계추진으로 뜻 있는 날을 지정하여 단 하루라도 외국인 근로자가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기획성 이벤트를 개발하여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함.</li> </ul>
	노사평화중재위원회위원장 활동비 부담지급	노사평화 정착을 위해 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위원장 활동비 지출은 위원회 개최와 활동 등에 쓰여짐이 바람직하다 사료되므로 지출방법을 개선하여 집행하기 바람.
사회복지과	여성회관 건립계획 미흡	이천시 여성을 위하고 지역사회 발전참여, 능력개발 기회제공, 복지증진 등 읍면동 전체 여성을 위한 회관이 되어야 하나 주변사정(주차, 교통)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여성을 위한 회관으로 전략할 수 있어 건립목적에 위배가 되며 현 시장 관사는 회관으로서의 부지가 협소하고 행사 이용시 주차시설 부족, 교통난의 문제점 등 주변 주민 민원이 증가 우려됨. 거시적인 측면에서 시의 발전에 맞추어 이천시의 여성을 위한 회관이 건립되어야 하고, 우선 당초 계획대로 근로자복지회관을 사용하고 사용시의 불편함 및 문제점 등으로 사용(이용)이 불가시 계획을 재수립하여 예산이 중복투자로 인한 낭비가 없도록 조치바람.
	장애인 목욕차량 운영자금 미지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가고 있고, 장애인도 정상인과 똑같은 생활을 영위할 권리는 보장되고 있으나 그들의 생활이 실상 자유롭지는 못하고 사회적 관심이 더욱 요구되고 있음. 정부에서 지원해 준 목욕차량이 부대 시설 및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아 차량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므로 예산을 편성하여 장애인 목욕차량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하기 바람.
환경보호과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 부적정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 재평가에 대한 책임을 지고"범폐주협"의 구성원을 새로이 교체하고 용역비 2,850만원을 환수 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를 거쳐 시행하고 용역발주업체를 제외한 다른 환경 연구소에 입지 타당성 조사를 재 실시하여, 공정한 재평가를 하여 폐기물시설 입지를 선정하기 바람.



부서별	주요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
환경보호과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수 탁관리철저	2003년 계약시 용역원가 계산 철저히 예산 절감토록 조치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을 철저히 규명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재계약시 계약내용 제6조(비용부담) 제 1항중 “한 건당 150만원”을 “300만원”으로 수정바람.
폐기물관리과	쓰레기 투기, 소각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검토	<p>패적인 주거환경 개선 및 불법행위 차단 등 공익성을 위해 정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고자 포상금 제도가 전문 카파라치에 의해 직업화되어 본질이 퇴색되어 가면서 점차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시 또한 많은 주민이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신고로 위반과태료를 부담해야 하는 현실에서 더욱 지능적으로 전문화 되고 직업화 되는 상황에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적법성을 떠나 이제는 검토되어야 한다고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p> <p>이와 때를 같이해 미지급, 또는 보류되고 있는 포상금에 대하여 신고자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포상금지급 소송에서 일단 패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포상금액의 규모 또한 자치단체의 조례로 얼마든지 조정·가능하므로 위 포상금 제도를 재검토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가기 바람</p>
농정과	학교급식소에 대한 이천쌀 사용 미흡	쌀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이천에서 이천쌀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사용자인 학생이 식비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담당과에서는 학교 급식 보조금을 예산 편성하여 쌀값차액으로 인한 급식비 차액을 보전해 주기 바람. ※인근시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급식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음.
축산과	가축방역(구제 역) 소독약품 사용 부적정	약품가격과 소득효과를 비교 검토하여 검증된 약품 중 4~5종을 선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예산절감 및 소득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향후 가축 전염병 발생에 의한 방역활동 전개시 전문가에 대한 자문과 더불어 약품선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추진하기 바람.
건설과	자전거 전용도로 관리 소홀	자전거 전용도로 관리 소홀로 인해 주변상가 및 주변 주민들의 쓰레기 하치장, 자동차주차장, 비닐하우스 건립 등으로 사용되어 기능상실과 더불어 자전거가 통행할 수 없도록 방지되고 있음. 이는 행정사후 관리 소홀로 인하여 예산만 낭비한 처사이므로 즉시 원상 복구토록 조치하고,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중리천 개수공사 로 인한 진입로 협소로 인해 주 민불편 가중	<p>하천개수공사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추어 시행함으로써 도시계획도로 폭 6m가 확보되지 않아 도로변으로 차량을 주차할 경우 차량의 교행이 되지 않아 쓰레기청소차의 진·출입이 불가하고 쓰레기를 양쪽교량으로 운반하여 배출 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조치 요망</p> <p>폐공 된 관정은 처리방법에 의하여 모두 완벽하게 처리한 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폐공 처리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지하수 오염을 야기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개발된 과정을 전수조사하여 사용하지 않는 관정은 지하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폐공처리하여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p>



## 회기별 주요안건 처리내용

부서별	주요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
교통행정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소홀	시가지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는 강력히 단속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하나 일요일을 포함한 법정 공휴일 65일을 제외한 300일동안 1일 33건의 단속 실적만으로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할 수 없음. 따라서 상습 정체구간에 대한 보다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미 징수한 금액에 대하여는 체납세 징수에 의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기 바람.
산림공원관리사업소	설봉공원내 식당철거 및 보상 자체사업 추진 소홀	설봉공원 식당 철거 및 보상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를 철저히 원인 분석하여 조기 완료토록 조치하고, 설봉공원 내 식재한 수목중 고사위기에 놓여 있는 은행나무에 대하여는 즉시 교체 후 식재토록 조치하고, 이후 같은 사례로 재차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할 것.
상하수도사업소	동지역 오·우수 분류관거 공사관리 철저	도로굴착 복구는 도로관리 규정에 의거 공사가 완벽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부실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조치를 취하고,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 발생치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002년후관 교체 공사관리 철저	도로굴착 복구는 도로관리 규정에 의거 공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실공사로 진행된 사업에 대하여는 재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 사업비지급을 중단하기 바람, 복구지역 내 보도블럭사용(재활용 60%, 신규자재 40%)내역을 철저히 조사하여 사용비가 집행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 ● 2002시정질문및답변

-도시, 건설, 사회, 농업, 환경등 시정 전 분야에 걸쳐 피부로 느껴왔던 주민불편 사항을 비롯 시정발전의 대안 모색을 위해 도출한 90여개 항목의 시정질문을 실시하여 집행부로부터 시정내지는 반영토록 하였다.



●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일부수정의결)

● 예산요구 및 승인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승인예산액	감 액	비 고
합 계	224,388,054	223,580,043	808,011	예비비로 충당
일 반 회 계	177,224,593	176,416,582	808,011	
특 별 회 계	47,163,461	47,163,46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위원장-김정호, 간사-이광희



**살인미군의 무죄판결 무효화와 한국 법정에서 처벌 및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전면개정을 위한 결의안(원안채택)**

광복 이후부터 계속되어 온 주한 미군의 범죄를 이제는 더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다. 주한 미군의 범죄는 50년이 지난 지금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범행은 더 대범해지고 잔인해져가고 있다. 이러한 주한 미군의 범죄를 우리는 더이상 묵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천시의회에서는 지난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소재 56번 지방도로상에서 미2사단 44공병대 소속 장갑차에 의해 여중생 신호순, 심미선양이 압사하는 사망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사고이후 주한 미군은 사고의 진상을 왜곡·은폐·조작하고, 한국 당국과 시민·사회단체의 형사재판권 이양요구를 거부해 오다가 지난 11월 18일 기만적인 주한 미군 군사재판을 열었으며, 동월 20일과 22일에는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와 운전병 마크 워커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고 11월 26일에는 두 살인 미군을 본국으로 빼돌린 파렴치한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주한 미군은 살인 피의자에 대한 무죄판결을 무효화하여야 한다.

또한, 두 여중생을 사망케한 살인 미군을 한국의 법정에서 처벌하고 미군범죄의 재발방지와 효순이, 미선의 한을 풀기 위해서도 이 사건의 전면적인 재조사와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며, 불평등 조약인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반세기 동안 유린당한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주권을 되찾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 회기별 주요안건 처리내용

이를 위해 우리 이천시의회 의원은 다음 사항을 촉구할 것을 결의한다.

1.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사망자의 유족과 한국 국민에게 직접 공개 사죄(謝罪)하라.
2. 주한 미군은 두 여중생을 사망케한 살인 미군의 무죄판결을 무효화 하고 형사재판 관할권을 한국에 이양하라.
3. 주한 미군은 유족, 사회단체 대표들과 공동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재조사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4. 한미 양국은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을 전면 개정 하라.

2002년 12월 17일

이 천 시 의 회 의 원 일 동

### ●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원안의결)

#### ● 예산요구 및 승인내용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승인예산액	감 액	비 고
합 계	321,805,716	321,805,716	.	
일 반 회 계	240,567,866	240,567,866	.	
특 별 회 계	81,237,850	81,237,850	.	

### ●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원안동의)

-이천시에서 운용 관리되는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모두 12종으로서, 총 조성액은 3,390,363천원이며 지출계획 381,654천원과 2002년도 말 기금 이월액 7,290,745천원을 포함한 2003년도 말현재액 10,299,454천원을 적립하여 운영하려는 계획임.

●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의결)

- 수수료 요율 인상 : 인근시 · 군과 형평성 유지
  - 내수면어업허가 신청에 따른 수수료(500원⇒5,000원)
  - 현재 원가보상율 10.0% ⇒ 100%로 상향조정
- 수수료종목 삭제 : 수수료 징수명분 상실
  - 입찰참가신청수수료(건당 10,000원) 1개종목

● 이천시체육진흥기금 운용 ·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일부수정의결)

- 체육진흥기금 재원중 시 출연금의 조성목표액을 설정하고 조성기간 및 조성금액을 조정함
- 당초 : 1998 ~ 2000년까지 3년간 매년 3억원
- 개정 : 조성목표액 50억원, 2003~ 2010중 매년 일정액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출연
- 수정주요골자 : “50억원”을 “30억원”으로

●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일부수정동의)

❖ 취득대상재산

- 토지(부발읍 종합운동장 확장 부지 매입)
  -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31-1번지외 46필지 103,771㎡(31,390평) 4,265,950천원
- 건물 :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115번지외 2개소 7동 32,484㎡ 55,424,000천원
  - 부발읍예비군영점사격장 및 부대시설(교보재창고, 세면장, 화장실)
    - : 4동 2,242㎡(678평) 494,000천원
  - 시청사 및 시의회 신축 : 2동 26,499㎡ 52,100,000천원
    - :시청사 : 1동 23,200㎡(7,018평) 45,613,000천원
    - :시의회 : 1동 3,299㎡ 6,487,000천원
  -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신축 : 1동 3,743㎡(1,132평) 2,830,000천원



## 회기별 주요안건 처리내용

### ❖ 수정주요골자

-이천시 재정 및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종합운동장 확장을 위한 부지 취득분과 실내체육관 건물분, 그리고 시 청사 및 시의회 청사 건물 신축분은 시 재정상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부동의 의결하고 시급한 예비군 훈련장의 경우는 원안동의 의결함.

### ● 이천시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결)

-본 개정조례안은 1976. 3. 13일 제정되어 '96. 3. 1 이천시 승격과 더불어 지금까지 제정 당시의 골자를 현행대로 유지해 온 조례안으로써 제2조의 복지관 위치와 제6조의 복지관 사용료는 현 운영체계에 불부합해 개정되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개정절차를 밟지 않았음은 물론, 읍·면·동장에게 위임근거 없이 현재까지도 읍·면·동에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가운데 이천시복지관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개정하고자 하는 안 제5조(사용금지)규정과 안 제10조의(검사), 안 제11조『원상복구』 규정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있는바 본 조례는 충분한 검토가 요망되므로 부결처리함.

### ●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의결)

-신축보건지소(호법·마장)에 대한 행자부의 운영인력 보강 승인에 따라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2명)과 지역정보화사업관련 한시정원에 대한 존속기한이 연장승인됨에 따라 연장된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관련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도모

### ●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의결)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자치행정국 주민지원과) · 2002년 12월 31일 ⇒ 2004년 6월 30일

### ●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원안동의)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및 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본 계획안 확정 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임.

## 제59회 임시회

□ 회기 : 2003. 1. 28 ~ 1. 30(3일간)

□ 처리안건 : 12건(조례안 11, 동의안 1)

□ 주요내용

●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의결)

-이천시립 청미도서관 개관에 따른 명칭 및 소재지를 안 제1조에서 명시하고, 본 조례 제15조의 각 운영실 중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부 통합과 폐지하며, 또한 본 조례운영상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각 조문상의 일부 자구를 정비

● 이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일부수정의결)

-제증명 발급 민원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착오 발급에 따른 손해배상 등) 발생에 대비하여 재정적 부담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기존 회계관계 공무원들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과 관련 보증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

❖ 수정주요골자

· 재정보증한도액 최저기준증액

-110만원이상을 ⇒ “5천만원이상”으로 에서 “3천만원이상”으로

● 이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의결)

-행정운영동인 창전동을 창전동과 증포동으로 분동 함에 따른 동장 정수 1명증원과 관할 구역을 조정하며, 또한, 증포동의 소재지와 관고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소재지를 변경하여, 이천시시청및 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별표에 소재지를 규정 및 변경



## 회기별 주요안건 처리내용

### ●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의결)

-처리업무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한 조직의 기능 조정을 통해 급변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

### ●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의결)

-상수도 시설증설 및 과대동(창전동) 분동과 관련하여 행자부의 운영인력 보강 승인에 따라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13명)

### ● 이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일부수정의결)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60%인상조정

구 분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현행 가격	90	170	330	800	1,580
개정안가격	140	270	530	1,280	2,530
인상 가격	130	250	490	1,200	2,370

❖수정주요골자 : "60%"인상을 "50%"로 조정

### ● 이천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축산농가의 규모에 따라 처리비를 차등화

· 현행 : 1원/ℓ

· 개정 : 허가대상 3원/ℓ, 신고대상 1원/ℓ, 규제미만 무료

-축산폐수 수집·운반수수료 20% 인상

· 규모에 관계없이 5원/ℓ ⇒ 6원/ℓ

### ●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의결)

-현재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비해 판매단가가 낮아 상수도사업 경영수지 적자가 증가함에 따라 본 사업 현안 문제인 시설확충, 수질개선, 경영의 합리화 추진 등 해결을 위해 상수도요금 평균 15% 인상

●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의결)

-현재 하수도요금이 생산처리 원가에 비해 평균단가가 현저히 낮아 하수도 사업 현안 문제인 시설확충 및 경영의 합리화 추진을 위해 하수도요금 평균 15% 인상

● 이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원안의결)

-전 국민 의료보험 통합 운영으로 전환되어 단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  
있음에 따라 현행 이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 조례는 사실상 기능 유실로 존치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이를 폐지

● 농어촌다목적광장조성시범마을사업계획동안안(원안동의)

-행정자치부의 농어촌 다목적광장조성사업 공모지침에 의한 배점 심사 기준에 의거 마장면  
덕평2리를 시범마을로 선정하여 환경친화적인 주차장, 주민쉼터, 소공원 등 다목적광장을  
마련함으로써 주민편익 도모





## 회기별 주요안건 처리내용

### 제60회 임시회

□ 회기 : 2003. 2. 28 ~ 3. 8(9일간)

□ 처리안건 : 4건(조례안 2, 동의안 1, 기타 1)

□ 주요내용

● 2003년도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 2003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조건부 동의)

❖ 취득대상재산

· 토지

총 50필지 107,076㎡(32,390평) 4,444,063천원

⇒ 증포동사무소 부지 취득

-이천시 증포동 산 36-2번지외 2필지 3,305㎡(1,000평) 178,113천원

⇒ 종합운동장 확장 부지 취득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31-2번지외 46필지 103,771㎡(31,390평) 4,265,950천원

※부지취득은 이천시재정형편을 고려 2년후부터 매입

· 건축물

총 2건 2동 1,651㎡(530평) 1,850,000천원

⇒ 증포동사무소 신축 - 1동 990㎡(330평) 1,200,000천원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 1동 661㎡(200평) 650,000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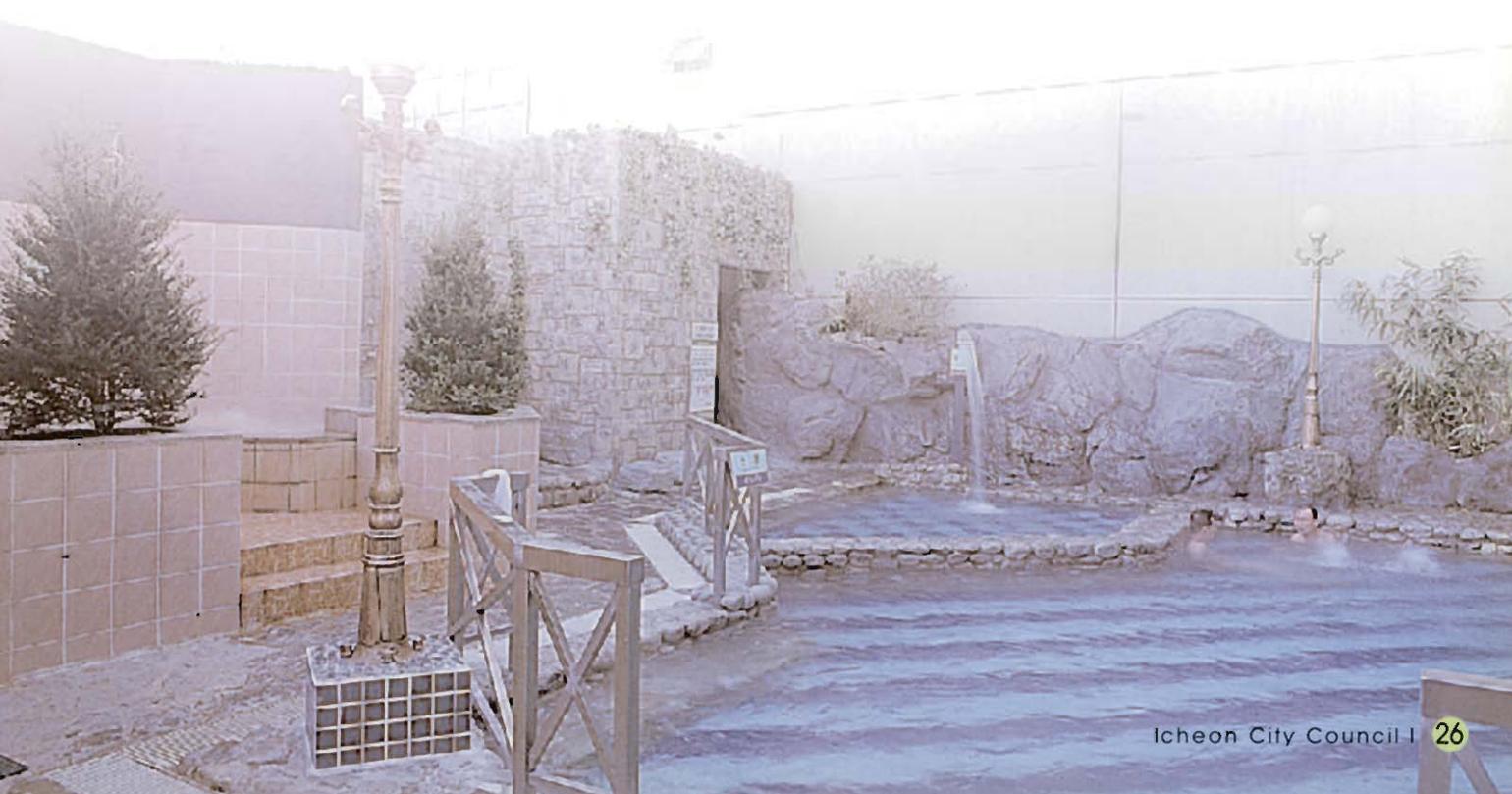
● 이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의결)

-조례 제3조 자치법규안 예외 규정에는 의회 입법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적용되지 않음  
으로써 일부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불러 올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 신속하고 적극적인  
입법활동 추진

● 이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레중개정조레안(원안의결)

-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 편중되어 지급되지 않도록 제한(단서)규정 마련
  - 지급횟수는 1인당 월간 5건 이하로 제한하여 지급
  -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된 사항에 한함.
- 폐기물 불법행위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신 고 내 용	지 급 액	비 고
1. 과태료 부과금액이 500,000원 이상의 내용을 신고하여 징수한 때	100,000원에서 ⇒ 50,000원으로	
2. 과태료 부과금액이 200,000원 이상의 내용을 신고하여 징수한 때	50,000원에서 ⇒ 20,000원으로	
3. 과태료 부과금액이 100,000원 이상의 내용을 신고하여 징수한 때	30,000원에서 ⇒ 10,000원으로	
4. 과태료 부과금액이 50,000원 이상의 내용을 신고하여 징수한 때	20,000원에서 ⇒ 5,000원으로	





## 회기별 주요안건 처리내용

### 제61회 임시회

- 회기 : 2003. 5. 19 ~ 5. 26(8일간)
- 처리안건 : 15건(조례안 13, 예산안 1, 기타 1)
- 주요내용

●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1회추가경정예산안(일부수정의결)

● 예산요구 및 승인내용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승인예산액	감 액	비 고
합 계	291,116,273	290,985,333	130,940	예비비로 충당
일 반 회 계	210,913,316	210,782,376	130,940	
특 별 회 계	80,202,957	80,202,957	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위원장-오성주, 간사-권영천





### (주)진로의 경영정상화 촉구를 위한 성명서 채택(원안채택)

“우리 이천시의회 의원일동과 20만 이천시민은 (주)진로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망국적인 법정관리 개시결정에 분노하고, 골드만 삭스의 비열한 행동과 추악한 음모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서울지방법원의 오판과 골드만 삭스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주)진로는 1924년에 설립되어 서민 술의 대명사가 되었고, 세계적인 주류회사로 도약하여 전세계 80여 국가에 소주를 수출하고 있다. IMF 이후 화의 경영을 해오며 경영위기를 맞기도 하였으나 “참鎮 이슬露”라는 국내 소주 역사상 최고의 제품을 출시하며 국내 소주시장의 54%를 상회하는 점유율을 달성하면서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600여명의 직접고용을 비롯해 1,000여명의 넘는 간접고용을 창출함은 물론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적립하여 이천시 장학재단에 기금을 출연하여 인재육성에 공헌하고, 각종 지역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이천의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러한 작금에 골드만 삭스는 교묘하게 (주)진로의 외자유치를 방해하고,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적 목적으로 회사의 채권을 저가에 매입함은 물론, 투자자로서 기업희생을 외면하고 돈벌이에만 집착하는 등 탐욕스러운 행태만 보이고 있는 사악한 미국계 금융투자 회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채권단이 국내 기업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서울지방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원의 망국적인 오판에 대하여 비애를 느끼며,



## 회기별 주요안건 처리내용



골드만 삭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주)진로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이익을 챙기려는 추악하고 야만스러운 행위에 우리 이천시의회 의원일동은 분노와 허탈감을 금할 수가 없다.

(주)진로는 지난 80년간 서민과 함께 하고,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국민의 정서가 담겨있는 국민기업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국민기업들이 악질적인 외국계의 천민자본인 벌쳐펀드의 불법적 책동에 희생물이 될 수는 결코 없다.

이에 이천시의회 의원일동은 (주)진로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 I. 서울고등법원은 국민경제 차원에서 서울지방법원이 결정한 회사정리 절차개시를 즉시 기각하고,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라!
- I. 골드만 삭스는 (주)진로가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회사정리 절차 개시 반대 항고에 즉각 동의하라!
- I. 정부는 (주)진로의 경영 건실화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여라!

2002년 5월 19일

이 천 시 의 회 의 원 일 동



- **이천시의회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의결)**
  - 산업건설위원회로 되어 있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이천시 직제를 고려한 상임위원회별 소관분야에 맞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정정
  
- **이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의결)**
  -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시 본청의 국장, 실장·담당관·과·소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를 조직관계법령상의 규정에 맞게(시 본청의 국장, 실장·담당관·과장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 정정
  
- **이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의결)**
  - 잘못 표기된 자치법규명칭인 '이천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을 '이천시의회사무기구 분장사무규칙'으로 정정
  
-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의결)**
  - 행정사무감사시기 조정
    - 현행 :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
    - 변경 ;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
  
- **이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의결)**
  - 행정사무감사시기 조정
    - 현행 : 제2차 정례회
    - 변경 : 제1차 정례회
  
- **이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원안의결)**
  - 전문위원별 직급중 산업건설위원 직급을 현행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정정



## 회기별 주요안건 처리내용

### ●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의결)

-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 존속기한 연장
  - 2003년 2월 28일(기존) ⇒ 2003년 8월 31일(6개월 연장)

### ●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의결)

- 인감증명법 개정으로 인감수수료 조항 신설에 따른 시·군조례 삭제
  - 인감증명 수수료(600원 ⇒ 삭제)
  - 인감의 개인신고(500원 ⇒ 삭제)
- 수수료 요율 인상 :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유지 및 원가보상 현실화
  - 세목별과세증명 수수료 : 800원 ⇒ 1,000원(원가 : 1,130원)
  - (용인시 : 1,000원, 광주시 : 1,000원, 여주군 : 1,000원, 양평균 : 800원)

### ●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의결)

-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7788호 2002. 11. 29일)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새로 정하고, 공유재산의 매각대금·대부료 및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기타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 이천시종합운동장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의결)

#### ❖ 체육행사

- 잔디구장 이용료를 평일 40,000원, 공휴일 60,000원에서 평일 200,000원, 공휴일 300,000원으로 개정

#### ❖ 체육이외의 행사

- 잔디구장 이용료를 평일 100,000원, 공휴일 150,000원에서 평일 800,000원, 공휴일 1,000,000원으로 개정

● 2003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원안의결)

❖ 이천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확대)지정

· 면적 : 57.591km<sup>2</sup>

- 주거지역 : 2.508km<sup>2</sup>

- 상업지역 : 0.070km<sup>2</sup>

- 공업지역 : 0.868km<sup>2</sup>

- 녹지지역 : 54.145km<sup>2</sup>

· 대상부락

- 관고동 : 사음동

- 중리동 : 증일동, 율현동, 단월동, 고담동, 장록동

- 증포동 : 갈산동, 증포동, 송정동

- 부발읍 : 무촌리, 죽당리, 마암리, 산촌리, 신하리, 가좌리,  
아미리, 수정리, 송온리, 가산리, 응암리

- 신둔면 : 수광리, 남정리, 도암리, 수남리, 소정리

- 대월면 : 사동리, 초지리, 대흥리, 대대리, 부필리

- 호법면 : 유산리

❖ 장호원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확대)지정

· 면적 : 3.286km<sup>2</sup>

- 주거지역 : 0.226km<sup>2</sup>

- 상업지역 : 0.007km<sup>2</sup>

- 녹지지역 : 3.053km<sup>2</sup>

· 대상부락 : 장호원리, 오남리, 진암리, 노탑리



## 회기별 주요안건 처리내용

-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일부수정의결)
  - 목적조항에 조례의 달성목적 규정 마련
  - 각 조항의 정확한 의미 규정과 전달을 위해 제2조를 명칭과 위치로 구분하여 명칭부분에 약칭표기
  - 본문 내용과 상반되는 문구가 있어 정확한 법규제정을 위해 관련 문구 수정.
- 이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원안의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 제62회 임시회

- 회기 : 2003. 6. 12 ~ 6. 14(3일간)
- 처리안건 : 2건(조례안 1, 기타 1)
- 주요내용

- 이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 시행되는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발전 구축

-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원안승인)

- 개요

감사목적	2004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획득은 물론 시 행정 추진상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 잘못된 부분은 개선토록 종용하고 타당성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시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감사기간	2003. 7. 7 ~ 7. 12(6일간)
감사대상	실·국·소 및 각 읍·면·동, 시 산하 민간위탁기관(환경사업소)
감사대상기간	2002. 1. 1 ~ 2003. 5. 31
감사반편성	상임위원회별
감사요령	사무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현황보고 청취, 감사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현장 확인
감사자료	연구개발 용역비 집행현황 외 310건

사진으로 본

의정활동



1. 루사태풍피해 현장확인(2002. 8. 10)
2. 소고리쓰레기매립장 현장확인(2002. 9. 5)
3.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2002. 9. 6)
4. 상하수도사업소 운영관리 현지확인(2002. 11. 8)



1. 구리시 종합폐기물처리장 견학  
(2002. 11. 9)
2.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학인) 활동  
(2002. 12. 4)
3.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태일) 활동  
(2002. 12. 6)
4.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감사  
(2002. 12. 3)-바탕그림



사진으로 본

# 의정활동



1. 콜레라 발생지역 순회방문(2003. 3. 31)
2. 생활축구대회에 참석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는 유준열 의장(2003. 4. 19)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2003. 5. 20)
4.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권영천) 활동(2003. 5. 23)



1.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간담회 개최 (2003. 6. 21)
2.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의원 연수 (2003. 6. 25 ~ 6. 27)
3. 2003행정사무감사 보고·청취시 발언 (2003. 7. 7)
4. (주)진로의 경영정상화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 전개 (2003. 6. 10)-바탕그림



## ♣ 의원 주소록

번호	성명	직위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선거구
1	유준열 (劉俊烈)	의장	신문면 소정리 201	자)638-7141 011-687-7141	467-841	신문면
2	서동예 (徐東藝)	부의장	모가면 소고리 542	자)632-3349 011-324-3349	467-873	모가면
3	권영천 (權寧天)	의회운영 위원장	부발읍 죽당리 372	자)632-7917 011-440-5872	467-861	부발읍제1
4	김학인 (金學仁)	자치행정 위원장	대월면 초지 2리 122	자)636-0562 016-362-0562	467-853	대월면
5	김태일 (金泰日)	산업건설 위원장	관고6동 226 설봉A 나/307호	자)638-3399 019-216-9911	467-707	관고동
6	오성주 (吳星柱)	의원	장호원읍 · 리 48	자)641-2366 011-9161-5299	467-902	장호원읍
7	이종률 (李鍾律)		부발읍 신하리 369	자)636-6127 011-325-0075	467-865	부발읍제2
8	김정호 (金正虎)		백사면 모전리 408-6	자)635-3594 011-277-3594	467-865	백사면
9	정운한 (鄭雲漢)		호법면 단천리 340	자)632-9078 011-669-2005	467-821	호법면
10	이광희 (李光熙)		마장면 목리 374-5	자)635-5466 011-217-5466	467-813	마장면
11	위철연 (魏哲鍊)		설성면 금당1리 산364	자)641-6021 017-211-6021	467-881	설성면
12	원종성 (元鍾成)		율면 산양리 364	자)643-8232 011-787-3601	467-892	율면
13	이현호 (李鉉鎬)		창전동 146	자)635-3365 011-264-3199	467-804	창전동
14	조명호 (趙明鎬)		창전동 444-3	자)635-3321 011-325-0865	467-807	증포동
15	민병효 (閔丙孝)		중리동 171-3	자)635-2774 017-410-9134	467-030	중리동



## 의회안내

### 의회방청

이천시의회에서는 시민 여러분께 회의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방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간단한 절차에 따라 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 ❖ 방청시기

- 임시회 : 필요시 수시 개최(연 45일 이내)
- 정례회 : 연 35일 이내
  - 제1차 정례회 : 매년 7월 5일
  - 제2차 정례회 : 매년 12월 1일

#### ❖ 방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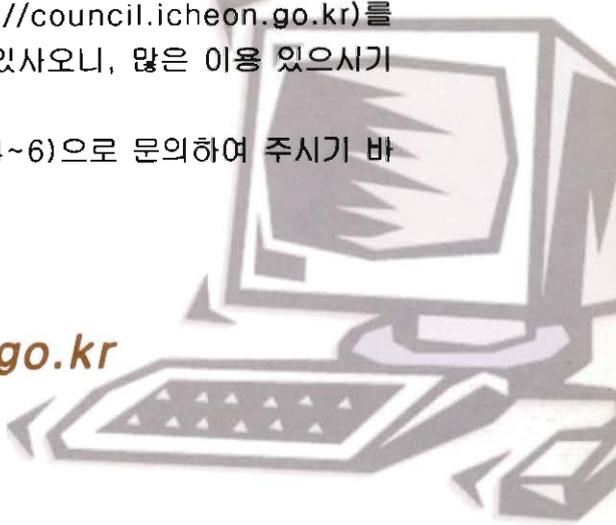
-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나 단체는 의회사무국에서 방청권을 교부 받은 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청권은 한정된 방청석 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으므로, 미리 의회사무국에 방문 또는 전화(644-25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의회 홈페이지

이천시의회에서는 시민에게 인터넷을 통해 의회의 각종 자료를 공개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icheon.go.kr>)를 개설운영하여 “열린의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사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전화 : 644-252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council.icheon.go.kr>





이 천 시 의 회  
Icheon City Council